

구미 고교인재-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 고교인재-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3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우수한 역량을 가진 지역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
- 나.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명 : 구미 고교인재-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
- 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 - 1) 추진근거
 - 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 - 다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 - 2) 필요성 : 기업 연계 인턴십 사업의 경험과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발굴, 인재 매칭, 사업 관리 등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- 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 고교인재-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업무 전반
 - 사업홍보, 사전 직무교육 실시, 참여학생·기업 모집 및 매칭, 인턴십 운영관리, 사업성과 분석·관리 등

라. 위탁기간 : 2026. 3. ~ 2027. 2.

마. 사업대상 : 관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80명 정도

바. 사업내용 : 시-기업체-학교 협력 고등학생 채용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

- 기업 수요 및 직무 특성을 반영한 사전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 실시
-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 학생의 조직 적응 및 직무 정착 지원
- 참여 학생 및 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350백만원(도비 188, 시비 162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직접비	간접비	비고
350	70	245	35	

아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

※ 구미 고교인재-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추진계획(교육청소년과)

자. 위탁구분 : 신규 위탁

3. 부서의견

- 지역 학생 인턴십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(2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(3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다.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: 2026. 3. 20. 개최 예정

라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 : 해당없음(신규 위탁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4조(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제6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- 1.~6. 생략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사업) 기술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
2. 기술교육훈련사업
3. 인력양성사업
4.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사업
5. 정보교류사업
6. 기술혁신지원사업
7. 시험생산사업
8. 시설·장비 운용사업
9. 전자·정보통신기기 등 부품소재육성사업
10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
11.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구미 고교인재-지역기업 인턴십 지원사업

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본 사업은 지역 고교생 대상 인턴십 운영, 참여기업 관리, 학생·기업 인센티브 지급 등을 포함하는 계속 사업으로, 공공위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의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사업비는 구미시 기업지원사업 운영 요령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
- 나. 사업의 지속성과 성과관리 체계 유지를 위해 매년 동일 규모(학생-기업)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액 편성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세출	○ 인건비	70	70	70	70
○ 간접비	35		35	35	35	35	175
○ 직접비	245		245	245	245	245	1,225
계	350		350	350	350	350	1,75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국비	-	-	-	-	-
도비	188	188	188	188	188	940	
시비	162	162	162	162	162	810	
민간	-	-	-	-	-	-	
기타	-	-	-	-	-	-	
합계	350	350	350	350	350	1,750	

5. 부대의견 :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

6. 작성자 :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박도연(☎480-270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분	금액(천원)	산출근거
합계	350,000	
인건비	7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참여인력 - (책임급) 6,256천원×11개월×32%(참여율)×1명 22,021천원 - (선임급) 4,690천원×11개월×31%(참여율)×3명 47,979천원
직접비	24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육운영비(직무교육) 20,500천원×1식 20,500천원 · 직무교육이수장려금 100천원×80명 8,000천원 · 인턴현장실습지원비 750천원×80명 60,000천원 · 근무환경 개선비1,500천원×80명 120,000천원 · 전문가활용비 100천원×80명×3월 24,000천원 · 국내여비 20천원×25회 500천원 · 회계 감사비 2,000천원×1건 2,000천원 · 사무용품비 250천원×4회 1,000천원 · 회의비 200천원×10회 2,000천원 · 연구·개발수당 7,000천원×1회 7,000천원
간접비	3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관공통경비 35,000천원

소 관 부 서		교육청소년과
입 안 자	과 장	박 영 표
	팀 장	심 주 희
	담 당 자	박 도 연 (480-2702)